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804
----------	-----

발의년월일 : 2019년 8 월 2 일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 (1명)

찬 성 자 : 김달호, 고병국, 유 용,  
김소양, 김제리, 이병도,  
김화숙, 이준형, 최웅식,  
송아량, 최 선 의원 (11명)

## 1. 제안이유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현행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9조는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구·공공기관 이외에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요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시장의 협조요청 대상을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의 출연·투자·출자기관”으로 한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적용대상기관”으로,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시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u>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u>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제9조(업무협조) -----                      -----                      ----- <u>적</u>  <u>용대상기관</u>-----                      -----                      ----- <u>있다.</u></p>